대학일자리본부운영규정

2020.6.3 제정2020.12.18 개정2022.2.16 개정2022.6.8 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대학일자리본부(이하 "일자리본부"라 한다)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12.18.>

제2조 삭제<2020.12.18.>

- 제3조(기능) ① 일자리본부는 본교의 취·창업 지원 서비스의 공간적·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·운영으로 체계성을 확립하여 본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② 일자리본부는 본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효율적인 경력개발을 도모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업무

- 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일자리본부에 진로취업지원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.<개정 2020.12.18., 2022.6.8.>
 - ② 일자리본부 업무의 총괄적인 지휘와 관리를 위하여 본부장을 두며, 본부장은 학생·인재개발처장이 겪임한다.
 - ③ 일자리본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본부장,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자격요건은 「직제 규정」제7조를 따른다.
 - ④ 일자리본부와 센터에는 본교 규정에 따른 교원, 연구원, 취업지원관, 전문 컨설턴트 및 사무조교를 둘 수 있다.
- 제5조(진로취업지원센터) 진로취업지원센터는 「사무분장규정」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12.18., 2022.6.8.>

[제목개정 2020.12.18.]

[제목개정 2022.6.8.]

제6조(현장실습지원센터) 현장실습지원센터는 「사무분장규정」 제4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.<개정 2020.12.18., 2022.6.8.>

[제목개정 2020.12.18.]

[제목개정 2022.6.8.]

제7조 삭제<2022.6.8.>

제8조 삭제<2020.12.18.>

제8조의2(자체평가 및 환류) 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 및 질 개선을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.

제 3 장 사업운영위원회

- 제9조(사업운영위원회) 본 대학 일자리본부의 합리적인 운영과 취·창업 유관 기관들을 총괄 조정하고 유기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- 1. 관련 규정의 제·개정
 - 2.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- 3.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- 4. 기타 취상업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
- 제11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일자리본부장, 대학교육혁신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국제처장, 산학연구처장, 창업지원단장, 진로취업지원센터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공별 진로취업책임교수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12.18., 2022.2.16., 2022.6.8>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제12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으로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 -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3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제1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<2020. 6. 3.>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한 각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0. 12. 18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(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부 칙<2022. 2. 1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(제11조)

부 칙<2022. 6. 8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